한국장애인고용공단	보 도 자 료	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6. 27.(월) 15:00 2022. 6. 28.(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7.(월) 15:00
담당 부서	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환경부	책임자	부 장 김기호 (031-728-7036)
		담당자	차 장 이병영 (031-728-7101)

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식회사 티몬, 「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」 설립 협약 체결

-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다-

□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**과(이사장 조향현, 이하 '공단') **(주)티몬**(대표이사 장윤석)은 6월 27일 **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「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*」 설립 협약을 체결**했다.

> 🗁 **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?**
> ▪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,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

○ 이번 협약식에는 **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(주)티몬 장윤석 대표이사**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**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**에 **공동의 힘을 모으기**로 했다.

□ 이번 협약 체결은 **소셜커머스계 선발 주자로**서, **"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를 지향" 하는 (주)티몬의**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.

○ (주)티몬은 올해 발달장애인 예술단 '브릿지온 아르떼(Bridge on Arte')에 희망을 전달하는 소셜기부에 이어, 이번에는 **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**

이어 나갈 예정이다. 2022년도 하반기 **제주특별자치도** 구(舊)도심에 장애인 **바리스타 카페**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**는 “대한민국 최초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㈜티몬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.” 라며, “다양한 역량의 파트너와 스토리 중심의 관계형 커머스를 추구하는 ㈜티몬이 **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**하여 지원하겠다.” 라고 의지를 밝혔다.

□ **㈜티몬 장윤석 대표이사**는 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,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를 지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붙임 1. 협약식 사진(행사 후 별도 송부)
2.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**

□ 제도 개요

○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,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



□ 설립 요건

○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[1]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

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(법 시행규칙 제3조)

제3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"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

1.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
2.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,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

상시근로자수	장애인 고용인원	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
100명 미만	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0	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
100명 이상 300명 미만		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 + 5명
300명 이상		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+ 20명

3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
4. 장애인 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

*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소유

1)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%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,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

□ 지원사항

○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

- 고용의무사업주가(모회사)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

○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지급

- 신규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실 투자액의 75% 금액을 지원, 3천만원 당 1명 신규고용의무

○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(조특법 §85의6)

-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게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 100% 감면, 그후 2년간 50% 감면

○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

-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·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

  * 공정거래위원회 『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』 개정('09.12.9)

  *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」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 (제22조의 2, '12. 12. 18)

○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, 맞춤훈련 지원

-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

-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

□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(2021. 12월말 기준)

(단위: 개소, 명, %)

유지 업체수	상시인원	장애인원	중증인원	장애인 고용률
126	8,559	5,579	4,273	65.2